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03

발의연월일: 2021. 5. 10.

발 의 자:이주환・金炳旭・김용판

김태호 • 백종헌 • 서병수

서일준 • 윤창현 • 정진석

정찬민 · 지성호 · 태영호

한무경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3인 이상이 필요한 반면, 관세사, 기술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의경우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자격을 가진 2인 이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를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행정사의 경우에도 여타의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동일하게 2인 이상으로 합동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 항). 법률 제 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394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사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394호 행정사법	법률 제17394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생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	2
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	
을 높이기 위하여 <u>3명</u> 이상의	<u>2명</u>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	
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	
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